

「2026년 농산업 수출활성화사업」 맞춤형 컨설팅 참가기업 모집 공고

□ 모집개요

- 개요 : 기업 규모, 특성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
- 지원내용 : **국고 100%** 지원사업으로 기업별 수출 역량진단을 통해 수출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
- 지원대상 : (개별) 농기자재 8개* 품목 수출(예정)업체 40개社 내외
(단체) 농기자재 8개* 품목 관련 운영기관 1개社 내외
- * 농기계, 비료, 농약, 종자, 시설자재, 친환경농자재, 사료, 동물용의약품
- 지원방법 : 컨설팅 전문업체의 기업별 전담 컨설턴트를 통해 진행
- 추진계획

단계	구분	추진계획(안)
0	기업선정	- 농산업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모집, 선정
1	사전상담 및 전담 컨설턴트 배정	- 기업의 수출 준비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
2	수출역량진단	- 현재 상황 진단(타깃시장 이해도, 제품역량, 마케팅 역량 평가)
3	맞춤형 지원	- 농기자재 품목별 전문가와의 매칭 상담
4	만족도 조사	- 맞춤형 컨설팅 만족도 조사

○ 컨설팅 내용

참여기업이 원하는 항목, 내용을 요청하여 컨설팅 진행 가능
- 예 시

구분	컨설팅 항목	컨설팅 목적	컨설팅 내용
맞춤형 지원	시장수요 분석	제품 시장성 분석	- 품목 맞춤형 시장 통계 분석 - 현지 보조금/인센티브 제도 유무 통한 시장수요 파악 - 현지 전문가 제품 시장성 상담
	경쟁력 진단	제품 경쟁력 진단	- 현지 경쟁 기업 진출 현황 확보 - 현지 경쟁제품 스펙 비교 분석 - 현지 전문가 제품 현지화 방안 제시
	진입장벽 대응	진입장벽 대응 방안	- 인허가 목록 - 인증 목록 - 타깃국 진출 시 주의사항 파악
	잠재고객 조사	유효 고객 발굴	- 현지 검증 고객 조사 - 제품 수출 셀링포인트 검증 - 현지 바이어 관심도 파악

□ 신청 및 발표

- 사전 공고기간 : 2026. 2. 11.(수) ~ 2026. 3. 2.(화)
- 신청기간 : 2026. 3. 3.(화) 09:00 ~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
 - * **참가기업 신청순으로 적격여부 판단 후 모집기업 수 초과 시 마감**
- 신청방법 : 농산업 수출 종합지원 시스템(<http://www.agroex.or.kr>)을 통한 온라인 신청

(농산업 수출활성화사업 → 공고 및 참가 신청 → 맞춤형컨설팅 → 신청하기)

- 신청서류 : 신청 단계에서 온라인 등록

구분	내 용
신청서류	① (필수) 온라인 - 수출실적 정보제공 동의 처리 * 최근 3개년('23~'25)간 수출실적 확인용 법인 공인인증서 필요 ** 동의 방법 [붙임. 농산업 수출활성화사업 정보제공 동의 매뉴얼(Tmy Data)] 참고 ※ 신청기업의 수출 역량, 사업의 효과성 판단을 위해 정보제공 필수 동의
	② (필수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	③ (필수) 사업계획서 (단체만 제출)
	④ (선택) 국내외 제품 인증·등록 취득 실적 및 특허 보유(PCT출원, CE인증 등)
	⑤ (선택) 외국어 카탈로그 및 외국어 홈페이지 캡처본 ※ ④, ⑤ :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

- 선정기준 : 신청서류 검토하여 사업 적격여부 판단
- 선정결과 : 농산업수출종합지원시스템 확인 (농산업수출활성화사업 → 지원내역)

□ 유의사항

- ① 작성내용이 허위이거나, 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환수를 요청할 수 있음
- ② 제출된 지원서 내용은 심사 용도 이외에 외부 공개를 하지 않으며, 제출된 자료는 선정 결과에 관계 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③ 평가 순위에 따라 예비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, 선정 기업의 포기 또는 지원예산 발생할 시 순위에 따라 지원
- ④ 추진일정 등은 평가결과 및 내부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

□ 문의처

○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농업지원단 사업 담당자(061-338-5743)

* 지원제외 대상(사업 수행중이거나 완료 이후라도 발견 시 환수조치)

- > 휴·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
- >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
- >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 - * 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참여 가능
- >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>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
 - * (특수관계기업)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 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, 부정행위 등으로 참여 제한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별도 사업체
- >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또는 국세·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/기업
- >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- > 기타 본 사업에서 규정하는 모집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
【별첨 2】 사업계획서(양식) - 단체 신청만 제출 필수

「2026년 맞춤형 컨설팅」 단체 운영기관 사업 계획서

2026. . .

○ ○ ○ ○ ○ (단체명)

목 차

1. 사업개요 -----
2. 운영기관 현황-----
3. 사업 추진 계획 -----
4. 예산 계획 -----
5. 기타 -----
6. 불임자료 -----

※ 사업계획의 상기 목차에 대하여 해당 Page를 기재하여야 함.

※ 본 장부터 Page No.를 기입 할 것

※ 서술란의 크기는 사업내용에 따라 조정가능

※ 서식 디자인 등은 변경할 수 있으나, 상기 목차의 큰 제목과 순서는 누락없이 작성되어야 함

사업 계획서

1. 사업개요

- 가. 사업명
- 나. 사업기간
- 다. 사업 목적
- 라. 사업 범위(지원대상, 지원내용 및 항목 등)

2. 운영기관 현황

- 가. 일반현황 및 연혁
- 나. 조직 및 인원
- 다. 주요 사업분야
- 라. 사업 활동 실적

3. 사업 추진 계획

- 가. 사업 목적 및 필요성
- 나. 사업 세부 추진 계획
 - (공고문 내 운영기관 업무범위에 명시된 각 업무사항의 세부추진계획, 구체적 방식 등을 신청기관별 인프라·인적역량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작성)
 - 컨설팅 참가기업 모집 계획, 지원 계획을 상세히 기재
- 다. 추진 일정
 - ※ 줄 삽입을 통해 추가내용 작성 가능하며, 디자인 변경 가능함. 다만, 일목요연한 내용과약을 위해 bar-chart 형태는 유지할 것

추진 일정													
일련 번호	사업추진 내용	1	2	3	4	5	6	7	8	9	10	11	12
1		■											
2			■	■	■								
3					■	■	■						
4							■	■	■	■			

- 라. 기대효과

4. 예산계획

가.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항 목	목-세목	금 액	산 출 내 역 (물량×단가×기간)

※ 최종선정 이후 예산산출내역은 부처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※ 부가세 포함 필요여부를 검토하여 필요시 산출내역에 포함

5. 기타

- 상기 작성사항 이외에 사업신청기관에서 작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

6. 붙임자료

- 사업계획서 본문 내용의 각종 증빙자료, 참고자료 등을 붙임자료로 제시